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에 대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기준

목적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Vehicle Sales, Leases, and Rental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혹은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에 대한 코로나 19 임시 지침"은 차량 판매 및 렌탈 사업체가 재개 또는 운영을 지속하는 시점에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차량 판매, 리스 및/또는 렌탈 사업체의 운영자/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고용주는 추가 예방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뉴욕주 재개의 2 단계 시점에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 사업체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사업체는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운영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 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3 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을 따르는 것 외에도, 필수 및 비필수 차량 판매 및 렌탈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건부 발행 지침 및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에 대한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정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차량 판매, 리스 또는 렌탈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차량 판매, 리스 및 렌탈 활동에 적용됩니다. 차량 판매, 리스 또는 렌탈 현장의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차량 판매, 리스 또는 렌탈 활동에 대하여 인력 및 고객을 점유 허가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대해 최대 점유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여기에는 고객이 포함되고 고객은 다른 사람과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경우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점포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단, 고객이 만 2 세 이상이고 그러한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또한 고객이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도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예: 구매 계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핵심 활동 또는 안전상 더 가까운 거리(예: 차량 시운전)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항상 모든 개인(예: 직원 및 고객) 사이에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예: 구매 계산) 및 직원이 다른 사람의 6 피트 이내에 있을 때마다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기반 안면 가리개와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보호대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표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작업자가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사용을 수정하거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를 공급하고 사용을 요구하거나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안면 가리개를 대신하여 플라스틱 차폐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세워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둘러보기, 시운전, 시운전 및/또는 렌탈을 예약으로만 수행하도록 고객에게 권장해야 합니다.
- 쇼룸 및 소매점 배치는 직원이 근무 중이나 고객이 점포를 둘러볼 때 직원과 고객이 모든 방향으로 최소 6 피트 떨어져 있도록 수정해야 하며, 물리적 장벽(예: 금전 등록기의 플렉시 유리 또는 파티션)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 직원이 마스크 또는 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감당할 수 있고 만 2 세 이상인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서는 안 되는 의료 또는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개인에게 의료용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며 직원과 고객이 일하고 쇼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단방향 통로 만들기, 또는 통행 흐름 재배치 또는 금전 등록기 하나씩 띄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엘리베이터, 수납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또는 차량 최대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제어실 창문 및 문 열기). 책임 당사자는 대기실에서의 회중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차량의 시운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차량 또는 공간에 화살표가 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공용 공간(예: 쇼룸, 주차장, 차고)에서 양방향 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일방통행을 위한 마커를 배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소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직원에게 다음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 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명확하게 지정된 입구와 별도의 출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각적 신호의 사용을 포함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외부에 고객을 대기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운전이나 차량을 렌탈하지 않는 한 고객이 차량에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예: 팀 회의)을 제한하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 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직원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고객 서비스 대기 구역,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이 모임(예: 휴식 시간, 식사, 교대근무 시작/중지) 시 사회적 거리두기(즉, 6 피트 공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교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C. 직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만 있도록 제한.
 - 직장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감소.

- 교대근무 설계(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비동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이 시운전 시 고객과 동행하는 경우 직원은 고객과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고 좌석에 앉아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고객이 시운전 시 다른 사람(예: 어린이)과 함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장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커브사이드 픽업 및 현장 인계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예: 고객이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 렌트카를 반납할 수 있음).
- 책임 당사자는 대기 구역이 고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 좌석을 6 피트씩 떨어트림).
- 책임 당사자는 밀폐된 공간(예: 딜러 쇼룸, 차고)에서 보거나 렌탈하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고 차량을 야외 공간(예: 주차장)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전자 전송을 통해 서류를 교환하고 가능한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세척 및 소독이 어려울 수 있는 시운전 차량(예: 직물 시트)을 렌탈하거나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현 불가능한 경우, 차량의 안전한 작동을 허용하는 일회용 보호 커버를 고려하십시오.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작용(예: 교대 근무를 끝내고 떠나는 근로자의 출구 및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입구 별도 지정) 및 이동을 제한(예: 직원은 가능한 한 자주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머물러야 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원격 상호작용을 장려해야 합니다(예: 온라인으로 둘러보기, 커스터마이징, 주문, 서류 작업).
-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한 편의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 셀프서비스 바
 - 자동판매기
 - 카페와 식사 공간

II. 장소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고객 또는 동료의 6 피트 내에 있을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마다(예: 구매 계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소매점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만 2 세 이상이고 그러한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하거나 방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및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공급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안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청소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사항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차량 판매 또는 수리에 N95 마스크가 전통적으로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더 보호가 잘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도구, 전화기, 물건 및 차량과 같은 물체의 공유, 전자 장비 및 열쇠와 같은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할 조치를 시행하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공유 물체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업계에 적합한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벗고, 청소(해당하는 경우)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의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용: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소독용: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손 소독제는 모든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 전체에 배치해야 합니다. 입구 및 소류 차량 근처와 같은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접촉이 많은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손 소독제 스테이션 근처에 놓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장소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 사용 전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교대근무,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근로자가 워크스테이션을 교체하거나 고객이 차량과 접촉할 때를 포함하여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차량과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차량을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을 배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도구나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이동이 많은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공유 공간, 차량, 전자 장치, 열쇠, 전화기, 난간, 손잡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의 픽업 또는 시운전 전 및 고객이 차량을 인계한 후에 모든 차량(내부 및 외부) 및 열쇠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기다리십시오. 24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음식 및 음료(예: 뷔페 스타일 식사)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변경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시 직원 수, 시간 및 고객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가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방문자, 고객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고객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건물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III. 절차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선별 관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 선별 관행은 직원이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직원들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 및 고객에게 선별이 필요하며 직원 또는 방문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인 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함.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의 증상이 있었음.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지 외에도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매일 체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체온 자료)의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또는 현장에 진입하는 방문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증상에 양성으로 선별된 직원은 업무 현장에 들어가는 안 되며,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동반하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검사 결과가 코로나 19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로 확인된 후 또는 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의 절차 및 정책에 대해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교대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모든 직원의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직원 및 방문자가 후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업무 장소 또는 구역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지를 유지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일지에는 직원이 코로나 19 로 진단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건강 스크린을 작성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되고 접촉 추적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직원이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직원 또는 방문자가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직장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고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처음 나타낸 시점이나 검사 결과 양성인 시점(둘 중 더 이른 시점) 전 48 시간 이내에 현장에 입장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및 주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을 했다고 경고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 시점에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